



조세심판원, '23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
- [조심 2022인6714]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취소를 위하여 발급한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 2022부583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나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 [조심 2022지134]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함

□ 조세심판원(원장 : 황정훈)은 '23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23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인6714, 2023.1.3.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같은 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및 이 중 일부를 취소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심판부는 이에 대해 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 점, ②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함

② 조심 2022부5834, 2023.1.11. (인용)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 및 자신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규정하였다가,

* 대법원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다수)

- ‘특수관계인 및 자신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변경하였고,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체납법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25%)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75%)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개정 전·후의 규정, 개정 후의 적용시기 및 청구인의 체납법인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위 국세기본법 개정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점주주의 범위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다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甲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장에도 甲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甲도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다만, 상기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는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③ 조심 2022지134, 2023.1.18. (인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5.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2021.6.3. 잔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심판부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사실상 잔금지급일(2021.6.3.)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 ②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③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명백한 취득시기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

□ 상기와 같은 ‘23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 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붙임) ‘23년 1/4분기 주요 결정 요약

담당 부서	조세심판원 행정실	책임자	행정실장	은희훈 (044-200-1720)
		담당자	사무관	주강석 (044-200-1731)



■ 조심 2022인6714, 2023.1.3.

(제 목)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AAA 외 5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 외 2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적용하여 2021.12.1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수정매출세금계산서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판단이유)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 점(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점,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소득세 등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2399, 2021.8.23. 등, 같은 뜻임).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심 2022부5834, 2023.1.11.**

(제 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체납법인은 2011.3.30. 설립되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12.4.부터 2022.1.31.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청구인의 형수) 및 BBB(청구인의 동생)과 함께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청구인 25%, AAA 50% 및 BBB 25%)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2.1.3. 및 2022.4.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

(심판결정) 처분청이 2022.4.4.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2.1.3.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2021.1.1. 이후 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을 제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판단이유)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25%)로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DDD(주)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CC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공소장에서도 CCC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CCC이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개정전.후의 규정, 개정 후의 적용시기 및 청구인의 체납법인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분은 상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움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심 2022지134, 2023.1.19.

(제 목)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1.1.16. ○○○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2021.3.31.에 잔금은 2021.5.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2021.6.3. 최종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처분개요)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심판결정) 이 건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명백한 취득시기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